

부록 4-가-2
원산지 신고서

예시 가

원산지 신고서

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상품과 관련된 상업 송장이나 그 밖의 서류에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.

본인_____ [이름 및 직위를 표기한다]은 [수출자/생산자/생산자 및 수출자] (해당되는 것만 삽입한다)로서 이 상업 송장에 열거되어 있는 상품은 [한국/필리핀] (해당되는 것만 삽입한다)이 원산지이며 한국-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제4장 (원산지 규정)의 규정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.

특이사항/비고:

인증번호_____서명 _____날짜: _____

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

원산지 신고서는 영어로 작성되고, 신고 대상 상품 관련 수출 송장에 이미 다음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, 신고서의 “특이사항/비고” 란에 그러한 정보를 포함한다.

- 가. 상품의 수입자
- 나. 상품의 수출자(생산자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)
- 다. 상품의 생산자(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라.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 6단위 세번 및 상품명
- 마.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
- 바. 원산지 신고일, 그리고
- 사. 규칙 9(원산지 신고서)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는 포괄신고서의 경우, 그 원산지 신고서가 포괄하는 기간

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

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 방식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, 다음의 지침이 서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

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상, 이 서류는 수출자가 수기 또는 타자 형식으로 읽기 쉽게 빠짐없이 작성하고, 수입자는 신고 시에 소지한다. 이 서류는 또한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. 추가 기재가 필요한 경우, 별지를 사용한다.

제1란: 수출자의 법적 이름, 주소(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)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, 인증번호를 기재한다.

제2란: 신고서가 최대 12개월(포괄증명기간)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한국 또는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에 적용되는 경우, 이 란을 작성한다. “부터”는 신고서가 포괄신고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다(이 날은 이 신고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). “까지”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.

제3란: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, 제1란에 정의된 대로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, 주소(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), 전화번호,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.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신고서에 포함되는 경우, “다수”로 기재하고, 제5란에 기술된 상품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, 주소(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), 전화번호,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. 제공된 정보가 비밀인 경우, “요청에 따라 세관에 제공 가능”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.

제4란: 수입자의 법적 이름, 주소(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), 전화번호,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.

제5란: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. 그 품명은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품명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의 품명과 일치하는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. 신고서가 상품의 단일선적에 적용되는 경우, 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하여,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,

그리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한다. 송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, 선적 주문번호,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번호를 기재한다.

제6란: 제5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, HS 세번 6단위까지 기재한다.

제7란: 제5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, 아래에 규정된 가부터 다까지의 적용 가능한 기준을 기재한다.

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, 상품은 한국-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제4.2조(원산지 규정)에 규정된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.

- 가. 제4.2조가호에 언급된 대로,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“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” 상품
- 나. 제4.2조나호에 언급된 대로,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부속서 4-나(품목별 원산지 규정)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
- 다. 제4.2조다호에 언급된 대로,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

제8란: 제5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,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, “예” 라는 문구를 기재한다.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, “아니오” 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이 신고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기초하는지에 따라 (1), (2) 또는 (3)을 기재한다: (1)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출자의 완전한 인지, (2)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(원산지 신고서 외)에 대한 수출자의 신뢰, 또는 (3)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, 그 상품에 관하여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신고서

제9란: 제5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,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기준(RVC)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, 제4.4조에 규정된 대로 RVC가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“BD”

를, 또는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“BU” 를 기재한다.

제10란: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. 즉,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“KR” 를,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“PH” 를 기재한다.

제11란: 이 란은 제5란에 기술된 상품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 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판정을 받는 경우와 같이, 이 신고서에 관하여 특이사항/비고가 있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. 발급 당국 및 발급일이 기재된다.

제12란: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, 날짜를 기재한다.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,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. 기재될 날짜는 신고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다.